

## 【사건번호 2018-0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데이터 사건

### 1. 개요

- 피신청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사건 대상 공공데이터
  - 요양기관 데이터\*
  - \* 요양기관코드, 요양기관명칭, 주소, 허가병실수 등
- 데이터 신청 목적
  -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에 따른 의무 이행 및 보험사기예방업무 지원 등

### 2. 신청취지

- 신청인은 신용정보법 제18조에 따른 의무 이행 및 보험사기예방(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지원을 위해 요양기관(영업/폐업\*) 데이터(이하 '이 사건 데이터 함)를 제공 신청
  - \* 요양기관코드, 요양기관명칭, 요양종별코드, 요양종별명칭, 우편번호, 지역코드, 주소, 개설일자, 허가병상수, 허가병실수, 의과의사수, 치과의사수, 한의사수, 간호사수, CT수, MRI수, PET수(총 17개)
  - \*\* 요양기관코드, 요양기관명칭, 요양종별코드, 요양종별명칭, 우편번호, 지역코드, 주소, 개설일자, 폐업일자(총 9개)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정보로서 자료 연계시점에 따라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를 민간 보험사 정보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로 제공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을 신청

### 3. 사실조사

#### 가.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제공 현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관리를 위해 요양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신고 받고 있음
  - \* 요양기관 일반(명칭, 개설일, 허가번호 등), 시설(입원병실, 진료실), 인력(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장비(장비명, 제조회사, 설치장소 등)

- 피신청인은 위 요양기관 현황데이터를 서면 및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www.hurb.or.kr)을 통해 신고 받고 전자화된 형태로 관리하고 있음
- o 피신청인은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데이터를 파일데이터 및 Open API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항목은 아래와 같음

<표 1.1 신청데이터 제공 현황>

영업기관	폐업기관
요양기관명칭, 요양종별코드, 요양종별명칭, 우편번호, 지역 코드, 주소, 개설일자, CT수, MRI수, PET수	요양기관명칭, 요양종별명칭, 주소, 개설일자, 폐업일자

- o 신청 데이터는 아니나, '의사 수'와 관련된 데이터로서 '의사 총 수, 일반의 인원 수, 인턴 인원 수, 레지던트 인원 수, 전문의 인원 수'가 제공되고 있으며, '허가 병상 수, 허가 병실 수'와 관련된 데이터로서 '상급 입원실(병상수), 일반 입원실(병상수), 성인/소아 중환자실(병상수), 신생아 중환자실(병상수), 분만실(병상수), 수술실(병상수), 응급실(병상수), 물리치료실(병상수)'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음

<표 1.2 관련 데이터 제공 현황>

	제공 데이터	비고
의사 수	의사총수, 일반의 인원수, 인턴 인원수, 레지던트 인원수, 전문의 인원수	(Open API)병원정보서비스
병상 수	상급 입원실(병상수), 일반입원실(병상수), 성인/소아 중환자실(병상수), 신생아 중환자실(병상수), 분만실(병상수), 수술실(병상수), 응급실(병상수), 물리치료실(병상수)	(Open API)의료기관별 상세정보서비스

**나.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

- o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임(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

- 이 사건 데이터는 피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업무수행을 위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데이터이므로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다. 공공데이터 제공범위 해당 여부

-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고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 제공거부 한 바, 해당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아래와 같이 검토함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음
  - 관련 판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의 취지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음(서울행정법원 2007.10.5.선고 2007구합15131판결)
  - 신청 데이터는 요양기관의 설립, 시설,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현황정보에 불과하므로 공개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고 그 결과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피신청인은 민간보험사가 특정 요양기관의 지연신고 등을 이유로 실비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해당 요양기관의 제재를 요구하는 등 국민과 요양기관의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만으로는 요양기관의 지연신고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거절\* 간의 인과관계 등, 신청 데이터의 공개와 국민 및 요양기관의 불이익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음(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4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 또한 신청인은 보험회사는 대부분 금융위원회의 표준약관을 따르며, 표준약관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미고지, 고의, 중대과실 등으로 제한하고(표준약관 제5조), 보험금 지연의 경우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계약자 등에게 동 사유에 대해 사전통지토록 규정(표준약관 제8조)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현황정보 신고 지연 등 행정적 오류는 보험금 지급 거부 및 지연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함
  
- o 또한 신청 데이터 중 일부는 피신청인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국민에게 개방되고 있음에도, 신청 데이터 전체에 대해 비공개대상정보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영업기관 관련 신청 데이터 중 피신청인이 미개방으로 답변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데이터가 Open API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신청 데이터를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o 신청 데이터 중 요양기관 코드의 경우, 피신청인이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는 아니나, 데이터의 성질을 고려하면 제공거부대상으로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판단됨
  - 요양기관 코드는 요양기관 현황관리를 위하여 피신청기관이 고안한 독자적인 기호(숫자) 체계로서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의원, 병원 등)에 따라 8자리로 구성되며,
  - 피신청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할 필요를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주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상 보호되는 제3자의 권리 포함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제공대상에 해당함을 규정한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에 배치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 데이터가 제공되면 민간 보험사가 이를 공동 활용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공데이터법 제28조제1항각호\*를 제외하고는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조제4항),
  - \*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공공기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등
- 민간 보험사가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해당 이용행위가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타당한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 4. 조정내용

##### 가. 조정결정 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신청인에게 제공한다.
- 신청인은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 및 데이터의 변경 가능성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 나. 조정결정 이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함(법 제17조제1항)
- 다만, 공공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또는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는 제외됨(법 제17조제1항각호)

- 피신청인은 데이터 제공 시 특정인에게 발생할 불이익 우려를 주장하나, 피신청인 제출자료 및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 데이터의 변경으로 인한 부정확성은 데이터 이용 시 확인을 거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공거부사유로 보기 어려움
  
- 다만, 제3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데이터를 제공받은 일자(또는 데이터 최종 업데이트 일자)와 함께 해당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정보임을 표시하도록 함

## 5. 조정결과

- 위와 같은 조정안을 신청인은 수락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데이터 제공 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 및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며 수락거부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은 불성립한 것으로 사건 종결함